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413

발의연월일: 2023. 1. 11.

발 의 자:서삼석·강득구·소병훈

안호영 · 양정숙 · 윤준병

이개호 · 이병훈 · 이상헌

한준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농장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축사시설 개선 비용,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·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농가 비용 부담, 제도의 홍보 부족 등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이 전체 축산농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저조하여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동물복지축산농장의 비중은 산란계 17.9%, 육계 6.1%, 양돈 0.3%, 젖소 0.2%에 불과한 실정임. 농가 입장에선 현행 지원만으로는 추가적인 비용을 투입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전환할 유인이 없는 상황으로, 관련 연구 등에 따르면 동물복지축산농장 확대를 위해서는 "동물복지 축산물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컨설팅 및 판촉활동의지원 등"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.

이에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한 지원 규정에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

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개척을 위한 상담·자문 및 판촉, 동물복지축산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, 해외마케팅, 홍보활동,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을 추가하여 동물복지의 실천이 농가 수익 증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에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(안 제29조제3항 및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64조제1항).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3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·자 문 및 판촉
- 4.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 공, 해외마케팅, 홍보활동, 외국인의 투자유치
- 5. 그 밖에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.

제64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·자문 및 판촉
- 4.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, 해외 마케팅, 홍보활동, 외국인의 투자유치
- 5. 그 밖에 인증농장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법률 제1885 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6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202 4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)	제29조(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)
①・② (생 략)	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	③
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된 축산	
농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	
지원을 할 수 있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.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
	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
	한 상담·자문 및 판촉
<u><신 설></u>	4.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
	한 축산물의 해외진출에 관
	한 정보제공, 해외마케팅, 홍
	보활동, 외국인의 투자유치
<u><신 설></u>	5. 그 밖에 동물복지축산농장의
	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
	<u>사항</u>
④ ~ ⑦ (생 략)	④ ~ ⑦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	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
개정법률	개정법률
제64조(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등)	제64조(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등)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	①
농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	
지원을 할 수 있다.	
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.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
	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·자
	문 및 판촉
<u> <신 설></u>	4.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
	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
	공, 해외마케팅, 홍보활동, 외
	국인의 투자유치
<u> <신 설></u>	5. 그 밖에 인증농장의 경영안
	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